


이 보도자료는 2017. 11. 1.(수) 14: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**인천지방검찰청**  
**부천지청**  
검찰  
PROSECUTION SERVICE  
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이노궁  
전화 (032)320-4302 / 팩스 (032)320-4488

**보도자료**  
2017. 11. 1.(수)

자료문의 :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실  
전화번호 : (032)320-4330  
주최임자 : 부장검사 신현성

**제목** **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범행 적발 - 6명 인지(2명 구속) -**

- 인천지검 부천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(부장검사 신현성)는 2016. 11.경부터 2017. 9.경까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불법 환전한 신종 환치기 범행을 적발하여, 중국인들과 불법 환전소를 동업하며 120억 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환치기 사범 6명을 인지와, 2명을 구속 기소, 3명을 불구속 기소, 1명을 기소중지하였음

‘환치기’란 정식 은행에서의 환전이 아닌, 국내에서 환전상에게 돈을 주고, 국외에서 외국환으로 지급받거나, 그 반대의 방법으로 외국환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받는 불법 환전을 의미함

- 피고인들은 중국과 국내에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, 중국 환전상이 환전의뢰인으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여 국내로 전송하면, 국내 환전상이 그 비트코인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을 환전의뢰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치기를 하였음
- 앞으로도 부천지청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임

**1 사건 개요**

**1. 피고인 및 공소사실**

순번	피고인	범죄사실	직업	처분내용
1	A○○	'17. 5.~9. 비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약 50억 원을 환전해 주어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	환전상	구속 기소
2	B○○	'16. 11.~'17. 9. '○○환전소'를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비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약 120억 원을 환전해 주어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	공무원 (환전소 운영)	구속 기소
3	C○○ (귀화자)	B○○ 등과 공모해 비트코인 등을 이용하여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약 120억 원을 환전해 주어 무등록 외국환 업무 영위	환전소 직원	불구속 기소
4	D○○ (중국인)	"	환전소 직원	불구속 기소
5	E○○ (중국인)	"	환전소 직원	약식 기소

※ 국내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다가 불법체류자로 적발되어 중국으로 추방된 후, 중국에 거주하며 B○○과 동업으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F○○(중국인)은 같은 날 기소중지 하였음

**2. 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방법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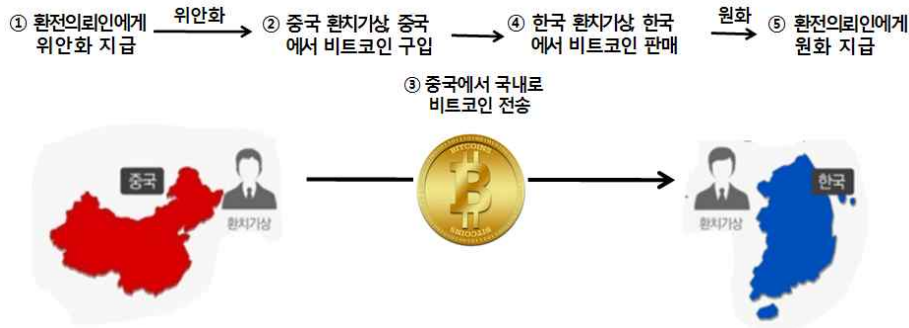
- 피고인들은 중국 내 환전소 운영, 국내 환전소 운영, 환전소 종업원, 현금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한 후
- ① 중국 환전상이 환전의뢰자들로부터 위안화를 지급받아 ② 중국

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고, ③ 이를 국내 환전상이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개설한 지갑으로 전송하면,

④ 국내 환전상은 그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판매한 후,  
 ⑤ 그 대금을 환전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, 현금전달책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환치기 범행을 하였음

※ 국내·외 가상화폐 거래소는 회원들에게 코인주소(일명 '지갑')를 부여하고, 회원들은 그 '지갑'을 통하여 비트코인을 매매하고, 매입한 비트코인을 보관·관리함

### <비트코인을 이용한 환치기 범행 흐름도>



- 피고인들은 중국 및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에 각 가입하여 부여받은 지갑으로 아무런 통제 없이 중국에서 매수한 비트코인을 국내로 전송하였음
- 피고인들은 환치기 수수료 이외에도,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중국 보다 국내가 비싼 점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매매 차익을 수익으로 얻었음
- ※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가격 차이로 인하여 중국 위안화를 원화로 환전할 때는 비트코인 또는 현금을 이용하고,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할 때는 현금을 이용하였음

## 2 수사 경과

- '17. 8. 30. 구속 송치된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수사 중 범죄혐의 확인  
 -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추적하여, A○○의 거래내역 확인
- '17. 9. 19. 비트코인 거래소(빗썸 코리아) 압수수색  
 -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비트코인 거래내역 확보
- '17. 9. 25. A○○ 체포 및 주거지 압수수색 / 9. 27. 구속영장 발부
- '17. 10. 12. A○○ 구속 기소
- '17. 10. 18. B○○의 환전소 및 주거지 압수수색
- '17. 10. 20. B○○ 구속영장 청구 / 10. 24. 구속영장 발부
- '17. 10. 31. B○○ 구속 기소, C, D 불구속 기소, E 약식 기소

## 3 수사 의의

- 가상화폐 거래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일당 적발  
 - 비트코인 거래를 이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을 적발하고, 환율 불안정을 높여 국내 외환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환치기 일당을 엄단함으로써 외환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음
- 차명으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공무원 구속  
 - 중국인 환전상과 함께 여러 지인의 명의로 불법 환전소를 운영한 공무원을 적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였음

### ●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점 확인

- 거래의 익명성 보장으로 인해 가상화폐가 **국내 재산을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해외 재산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수단**이나, 보이스 피싱, 마약 거래, 사이버 도박장 개설 등 **각종 범죄의 수익금을 빼돌리는 이동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음**
- 실제로 본건 수사과정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불법 환전한 수십억 원의 자금이 국내 카지노에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음
- 그러나,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법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으로 가상화폐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을 확인함

#### [주변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제화 현황]

- [미국] 화폐가 아닌 주식 등 자산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며, 인가를 받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하여금 자금세탁방지법을 준수하도록 규정함
- [중국] 가상화폐 공개를 금지하여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운영을 중지시키고, 규제 방안을 마련 중임
- [일본] 일본 금융청은 '17. 4. 11개 기업을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업체로 승인하고, 자금결제법을 시행하여 가상화폐를 지급결제 수단으로 법제화하는 등 가상화폐 거래를 양성화하여 국가가 관리함
- [독일] 사적 거래에서 이용 가능한 민영화폐로 규정

## 4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부천지청은 가상화폐가 범죄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, 가상화폐를 이용한 신종 범죄에 엄정 대처할 예정임
-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·허가제 도입 등 가상화폐 거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 검토 후 제도개선 건의 예정임